보상위원회운영규정

【제정】 2001.05.03
【개정】 2002.02.05
【개정】 2002.12.26
【개정】 2004.02.10
【개정】 2010.05.25
【개정】 2011.03.30
【개정】 2014.03.28
【개정】 2014.09.23
【개정】 2016.03.23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정관 제37조,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2, 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 제4조에 의거, 보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<개정 2016.03.23>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구성)

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사내이사를 제외한 3인의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이중 1인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 <개정 2016.03.23>

② 위원은 이사회에서 임명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,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임자,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6.03.23>

③ 위원회는 위원회내에 간사 1인과 실무위원회를 둔다.

제4조(직무)

①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4.03.28>

1. 대표이사, 사내이사의 보수 기준과 지급방법 설정
2. 대표이사의 경영목표 설정 및 변경
3. 대표이사 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에 의한 성과급 지급기준 설정
4.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설정 <개정 2016.03.23>
5. <삭제 2014.09.23>

②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, 관련 자료 및 보고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 및 위원의 의무 등)

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직무 수행 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에 대해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.

③ 위원회는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한 결과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09.23>

제6조 <삭제 2011.3.30>

제7조(성과평가)

① 성과 평가는 대표이사 성과평가와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 업적평가로 구분한다. <개정 2016.03.23>

② 대표이사 성과 평가는 보상위원회가 결정한 연도 경영목표에 대한성과 평가로서 년 1회 실시한다.

③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 업적평가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,경영임원간에 체결한 경영계약 목표에 대한 성과평가로서 년 1회 실시한다. <개정 2016.03.23>

제8조(의결)

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② 위원회는 의사의 경과 사항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의 등)

① <삭제 2011.3.30>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,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중대한 사유로 인해 경영계약상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요구할 때 위원장이 회의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한다.

③ 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된 행정사무는 회사내 관련부서가 수행한다.

제10조(위원의 임기)

위원의 임기는 대표이사의 경영계약 기간으로 한다. 단, 계약기간 종료이후에 추진되는 경영계약 성과 평가는 당해 보상위원회에서 추진한다.

제11조(관계인의 출석 등)

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(필요경비)

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 의거 위원회 운영기간 중 위원에게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

제13조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(2001. 5. 3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규정) 본 규정은 제6조, 제7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1년 대표이사 경영계약은 보상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일 이후에 체결하고 사내이사의 성과평가는 연말평가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2.5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12.26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2.10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5.25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3.30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3.28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9.23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3.23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